

「코로나-19」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

**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수험자 방역**

**주의사항 안내**

2022. 2.



**농림축산식품부**  
**방역정책과**

# 1. 시험장 방역 조치

## 가 사전 준비

### □ 응시생 사전 확인사항

#### <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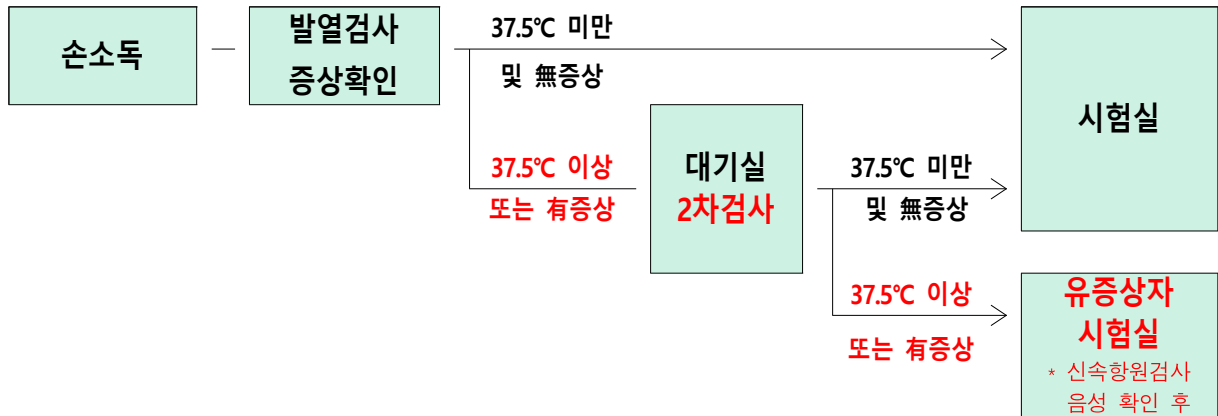
- ① (수험자) 자가격리자\*, 코로나-19 확진자\*\*, 기침, 호흡곤란 등 유증상자\*\*\*
  - \* (자가격리자) 킨텍스 제2전시장의 뒤편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
  - \*\* (확진자) 사전 "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"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또는 전담병원에서 시험 응시 가능
  - \*\*\* (유증상자) 킨텍스 제2전시장의 2층 또는 별도 마련된 "유증상자 시험장"에서 응시 가능

#### < 시험장 사전 고시사항 >

- ① (출입금지) 코로나-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일반시험장 출입금지
- ② (유증상자)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
  -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 전 사전에 방역관리원에게 신고
- ③ (수험자)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,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,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

## 나 시험장 입실

### 【시험장 출입 절차】



#### ※ 발열, 호흡기 증상의 별도관리 판단기준

- (발열) 대기실로 이동 후 2분간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, 3분 간격으로 2회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37.5°C를 지속적으로 넘을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시 유증상자 시험실로 배치
- (호흡기 증상) 대기실로 이동 후 5분간의 대기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기침을 할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시 유증상자 시험실로 배치
- (기타) 대기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등 5분간 대기 후 37.5°C 이하 및 호흡 안정 등 증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일반시험장으로 입실

### □ (출입) 수험자 입실 시 일정한 간격(1.5m 이상)이 유지

- (입장절차) 손소독<sup>①</sup>, 발열 체크<sup>②</sup>, 자가문진표\* 제출(서면, 온라인)<sup>③</sup> 후 입장
  - \* (기분) 「코로나-19 자가 점검표」를 미리 작성하여 시험장 입장 시 제출,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입구에 비치된 「코로나-19 자가 점검표」 활용
  - \*\* (온라인) ‘카카오 코로나-19 자가 문진’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장 제출

### □ (발열검사) 출입자 전원 대상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 발열 확인

- (검사방법) 비접촉식 온도계에서 발열(37.5°C 이상) 확인 시 접촉식 온도계(고막측정식)를 사용하여 추가 측정
- (입실조치) 37.5°C 미만 및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없는 경우
- (대기조치) 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2차 검사 장소(대기실)로 이동 안내(방역관리반원 인솔)
  - \* 대기실에서 5분간의 대기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신속 항원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유증상자 시험실로 배치

## 다 시험 진행

- 시험실 조치사항(유증상자 시험실 포함)
  - (마스크) 응시생은 감독관의 안내 없이 마스크 탈착 불가
    - 응시생과 수험표 사진 대조의 경우에만 일시적 마스크 탈착 허용
  - (손소독) 응시자·감독관 등 모든 인원이 시험실 출입 및 화장실 이용 후, 손소독 수시 진행
  - (소지품)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서 개인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본인 책상 아래에 정리
    - (휴대폰) 전원을 반드시 끈 후, 소지품과 같이 의자 아래에 정리
- 복도·화장실 이용 시 유의사항
  - (간격유지) 응시생은 복도·계단 이동 및 화장실 이용 대기 시 앞·옆 사람과의 간격(최소 1.5m 이상)에 유의
  - (화장실 이용방법) 내부 혼잡상황을 확인하여 대기 후 이용하며, 이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을 사용하여 손세척 실시
  - (화장실 구분) 자가격리자 시험장 및 유증상자 시험장은 별도의 화장실 이용, 해당 수험자는 반드시 별도 마련된 화장실만 이용가능

## 라 시험 종료

- (퇴실)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관리반 통제에 따라 퇴실
  - (퇴실방법) 일반실 응시생은 시험관리본부(방송실) 통제에 따라 출입구에 가까운 시험실부터 순차 퇴실

## 마 코로나-19 확진자 응시 관련 방역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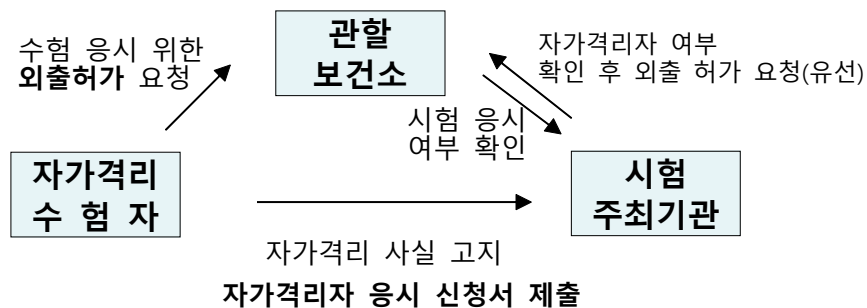
### □ 응시요건

- 시험총괄부서(농식품부 방역정책과)에 **사전신고\*** 하고 주치의로부터 **응시가 가능함을 확인**(의사소견서 등으로 확인) 받아야 응시
  - \* (사전신고) 유선(044-201-2525) 상담 후 팩스(044-868-0628)로 「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신청서」 제출, 확진자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첨부 제출
- 또한, 시험 당일 09:20까지 지정된 시험장(생활치료센터 및 감염병전담병원) 내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일 시 응시 가능

## 바 코로나-19 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 조치

### □ 응시요건

- “농식품부 방역정책과“에 **사전 신고\***하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**외출허가를 받아서 제출**
  - \* (사전신고) 유선(044-201-2525) 상담 후 팩스(044-868-0628)로 「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신청서」 제출
- 또한, 시험 당일 09:20까지 지정된 시험장(킨텍스 제2전시장의 별도 시험장) 내 시험실에 입실 완료 시 응시 가능



※ (이동) 자가격리 수험자는 관할보건소(지자체)와 협의하여 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필히 이동

##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을 위한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문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.

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
### 1. 수험자 협조 사항

- 모든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.
  - 단,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.
- 모든 수험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.
  -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
  -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.
-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(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.
-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.

### 2.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



## 붙임 2

##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수험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

### ■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

- 자가격리 수험생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.
- 시험장 이동방법은 자가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 외부 접촉이 없도록 조치
  - 시험장 출발, 시험장 도착, 시험종료, 격리지 복귀 시(총 4회) 전화 또는 앱으로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합니다.
  -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.
  -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
  -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
- 자가격리 장소(집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,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
-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.
-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.
-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-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.
-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.

※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## ■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(운전자) 준수사항

-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,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- 보호자(운전자)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,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의 대각선)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.
-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,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.
-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.
  -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
-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,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.
- 이동 중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.
-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.
-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(손잡이 등)은 소독하여 줍니다.
  -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, 자가격리 장소(집)에 하차 후 1회,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.



**붙임 3**

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신청서

**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신청서**

-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행일 1일 전 18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(방역정책과)에 시험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 
- 신청방법 : 유선(044-201-2525) 상담 후, 팩스(044-868-0628)로 신청서 제출
-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자격시험 응시 신청서를 접수하고, 시험 시작(10:00) 40분 전(09:20)까지 지정된 시험장 내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.

 원서접수 내역

성명	주민등록번호	응시번호	비고 (시험실)

 연락처 및 주소

구 분		작성 내용
① 연락처	본인	
	가족 등	
	관할 보건소	
② 주소(치료 및 격리장소)		

 첨부서류 구비현황

제출서류(양식)	(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
①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로 같음)
② 의사 소견서(확진자에 한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(시험 당일 응시 전까지 제출 가능)

상기 본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통지에 따라 주치의 또는 관할 보건소의 승인(예정)을 받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일 2022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: (서명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